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과다 산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화성시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 5급 이하 공무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사고(질병, 징계 등)가 있을 때 사고가 생긴 직위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정·현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결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성시에서는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2. 8. 1.부터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에 파견하였고, 결원 보충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파견된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위는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산정할 때에 직무대

리로 지정할 직위를 결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2012. 7. 26. 지방○○ ○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2012. 8. 1. ○○○○○○○에 소속 4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석이 발생한 4급 직위에 5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함에 따라 5급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에 포함하여 정당한 결원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명을 승진후보자로 결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관서에서는 2012. 7. 26.부터 2015. 6. 25. 사이에 5차례에 걸쳐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산정하면서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5급 직위까지 결원 수에 포함하여 승진예정자로 의결한 후 결원이 생길 때마다 각각 5급(과장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향후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수를 과다 산정하여 승진예정자로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